

의안번호	2209056
의 퇴 인	한준호의원
회 답 일	2025.4.14.
추계번호	25D1618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제2항 (시설 점검)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점검할 때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함	의무규정
		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조제2항 (시설 점검)	미대상: 개정안 제12조제1항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시설 점검 사항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, 행정안전부의 ‘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’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
	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중화장실 점검 근거 마련(안 제12조제2항)

-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¹⁾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

1) 현행법 제3조(적용 범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(이하 "공중화장실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

1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
2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·제7호·제10호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, 시·군 또는 구(구는 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·제5호·제7호·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·임시시장·상점가·전문상가단지

수 있도록 하는 경우, 점검을 위한 공무원 출장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,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이 필요한 사유, 점검 빈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[참고자료]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현황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

[참고자료]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현황

구 분	공중화장실 수(A)	안전관리시설 설치 현황(B)	설치 비율 (B/A)
계	69,385	37,874	54.6%
서울	9,358	7,102	75.9%
부산	1,181	1,105	93.6%
대구	1,966	906	46.1%
인천	2,162	1,564	72.3%
광주	1,009	409	40.5%
대전	744	578	77.7%
울산	2,355	2,154	91.5%
세종	724	314	43.4%
경기	13,507	6,034	44.7%
강원	4,036	1,582	39.2%
충북	4,792	2,282	47.6%
충남	4,034	2,220	55.0%
전북	4,431	1,745	39.4%
전남	5,429	2,515	46.3%
경북	5,349	1,874	35.0%
경남	6,299	3,687	58.5%
제주	2,009	1,803	89.7%

자료: 행정안전부